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27일

군산시 규칙 제 751 호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만 3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당직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직근무자의 편성

구 분 기 관 별		숙 직	일 직 (토요일, 공휴일)
시 본 청	당 직 사 령	1명 - 6급(남성)	1명 - 5급 또는 6급(여성)
	당 직 원	2명 - 7급 이하(남성)	2명 - 7급 이하(여성)
사 업 소	당 직 원	2명 - 재택당직원1	
읍·면·동주민센터		재 택 당 직 근 무	

[별지 제5호 서식]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

수신 : 행정지원과장

결재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당직근무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직근무 면제사유							
비 고							

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6조(당직근무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u> <u>1. 신규 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날로부터 7일간 당직 유예</u> <u>2. 여성 공무원은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당직 유예</u>	<u>제6조(당직근무 면제)</u> ① <u>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u> 1. 임신 중인 공무원 2. 만 3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u>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당직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u>

군산시 공고 제2021-1504호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1996.3.1.일 이전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현재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상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화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참조 : 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산업혁신과(기업협력계)

○ 전 화 : 063)454-2752, FAX : 063)454-27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협력계 (전화 063-454-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안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1-1528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 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군 산 시 장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써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여 관련 조례 정비 를 통해 대상자 및 감면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안 별첨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2항

- 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군산야외수영장 이용료 ⇒ 이용료로 수정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 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대상자 관련 규정 ⇒ 수정 및 추가

○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3

-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대상자 관련 규정 ⇒ 수정 및 추가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제12조 및 별표1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 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대상자 관련 규정 ⇒ 수정 및 추가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73-703 군산시 변영로 281, 체육진흥과
- (2) 전화 : 454-3294, FAX : 454-6022
- (3) 전자우편 : qneo1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454-3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군산야외수영장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제2조(「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감면비율	대상시설	감면가능 경우
전액감면	수영장 강의실	1. 군산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
100분의 5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12.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세대원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분의 2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기구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의 개정)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부가세별도)	비 고
1회 입장	성 인	2,000	<u>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u>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경노	1,000	
회 원	성 인	40,000	
	청소년·군인	30,000	
	어린이·경노	20,000	

- 회원이라함은 1개월이상 입장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개월 이상 회원에게는 월회비의 20%, 6개월은 25%, 12개월은 30%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20명이상 단체이용시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 제12조제1항제1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 회원이용시간은 1일 1회에 한하며 2시간 이내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생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군산야외수영장 이용료의 50%를</u>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② ----- -- <u>이용료</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에 의하여 <u>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u>	2. 「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 <u>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에 의하여 <u>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u>	3.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 <u>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에 의하여 <u>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u>	4. 「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u> 」에 의한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사람</u>	5.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 <u>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u> 」에 의하여 <u>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u> <항 신설 2009.05.15, 개정 2014.12.16.>	6.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7.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8.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 설></u>	9. 「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
	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개정전>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감면비율	대상시설	감면가능 경우
전액감면	수영장 강의실	1. 군산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
100분의 5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10.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세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분의 2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기구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후>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감면비율	대상시설	감면가능 경우
전액감면	수영장 강의실	1. 군산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
100분의 5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12.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세대원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분의 20 감면	수영장 강의실 수상레저기구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수영장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국가보훈대상자</u>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
3. ~ 6. (생략)	10. ~ 13.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개정전>

[별표1]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부가세별도)	비 고
1회 입장	성 인	2,000	<u>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u>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경노	1,000	
회 원	성 인	40,000	
	청소년·군인	30,000	
	어린이·경노	20,000	

- 회원이라함은 1개월이상 입장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개월 이상 회원에게는 월회비의 20%, 6개월은 25%, 12개월은 30%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20명이상 단체이용시는 20%,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포함)에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 회원이용시간은 1일 1회에 한하며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후>

[별표1]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부가세별도)	비 고
1회 입장	성 인	2,000	<u>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u>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경노	1,000	
회 원	성 인	40,000	
	청소년·군인	30,000	
	어린이·경노	20,000	

- 회원이라함은 1개월이상 입장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개월 이상 회원에게는 월회비의 20%, 6개월은 25%, 12개월은 30%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20명이상 단체이용시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 제12조제1항제1호~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 회원이용시간은 1일 1회에 한하며 2시간 이내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1 - 1530호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 산 시 장**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안 제3조)

라. 광고의 비용(안 제4조)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안 제6조~제11조)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13조)

자. 위탁(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전화 : 063-454-3983, FAX : 063-452-69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계(전화 063-454-39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붙임 참조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 례 안 내 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산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산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시장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산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
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
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군산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소정보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공고 제2021-1531호

공 고

「군산시 경관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제시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중 민원 신청 취하 간주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민원 철회 간주규정 개정(안 제6조제3항)

-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자료요청 대상 개정(안 제6조제4항)

- 관련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 관련기관에

○ 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6조제1항)

- 법 제16조제1항 → 법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7월 17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전화 : 063-454-4303, FAX : 063-454-4299)
- 전자우편 : leonian035@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전화: 454-43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경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를 “기관에”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② (생략)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u>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u>	③ ----- -----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u>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u>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u>기관에</u> -----.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6조제1항</u> 에 따른 경관협정 (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u>법 제19조제1항</u> ----- -----

군산시 공고 제2021-1536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기존 수수료 납부 방법(전자수입증지)를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우) 54078
- 전 화 : 063-454-3612, FAX : 063-454-42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063-454-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수수료) ① (생략) 1. ~ 3.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u>전자수입증지</u>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제3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 <u>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 · 전자결제의 방법으로</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21-11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4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금암동 29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49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6일

◆ 사업의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금암동 29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하나리움아파트 앞 미개설 구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개설 L=42m, B=1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정비계)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7.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금암동	139-36	대	393	5	이주석	군산시 추동로 42, 306동 903호	옥구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09-7	지상권, 근 저당권	지분 1/2
						박은화	군산시 추동로 42, 306동 903호	지분 1/2			
2	군산시 금암동	139-49	도	247	73	국 (건설교통국)					지분 284/337
						김종숙	군산시 중동 139-18				지분 4/337
						추점례	군산시 중동 139-18				지분 42/337
						군산시					지분 7/337
3	군산시 금암동	139-39	도	24	2	고진태	군산시 금암동 139-38				
4	군산시 금암동	299	대	118	118	김종숙	군산시 금암길1길 1	군산팔마 신용협동조합	군산시 경암로 16	근저당권	지분 41/43
						군산시		지분 2/43			
5	군산시 금암동	300	대	276	214	군산시					
계	6필지			1,058	412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실제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내용	
중로 2-149	1	군산시 금암동	298	대	건물	주택1층 (적벽돌조)	84.24㎡	김종숙 군산시	군산시 금암1길1					
						주택2층 (적벽돌조)	51.42㎡							
			299	대		옥상 (콘크리트+슬라브)	83.48㎡							

군산시 고시 제2021-11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입안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 7. 19.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496	6	국지 도로	29	수송동 소2-785	수송동 18-47	일반 도로		군산고242 (’03.4.17)	
변경	소로	2	1119	8	국지 도로	29	수송동 소2-785	수송동 18-47	일반 도로		군산고242 (’03.4.17)	폭원확장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496	소로 2-1119	• 폭원확장 - B=6m → 8m (증 2m)	•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원확장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2021-2호

당북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북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목적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 추진

2. 사업명 : 당북리 농촌다움복원사업

3. 사업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일원

4. 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100%)

5.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

6.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당북 어울림센터

나. 지역경관개선 : 당북제 생태원, 걷고싶은 당북나들길

다.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7. 사업효과

- 농촌지역 생태·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아름다운 농촌경관 보전 유지
- 지역주민 참여로 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주체로 삶의 만족도 향상

8.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9.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10.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1-1471호(2021.07.16.)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망, 주소·거소불명 및 수취거부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3. 사 업 위 치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선연리 일원
4. 공 고 기 간 : 2021. 07. 16. ~ 2021. 08. 06.(14일이상)
5.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 개인별 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계좌입금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상,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지참)
7.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063-440-5721)
※ 단,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는 토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8. 공고 대상토지조서 : 별첨

2021. 07. 16.

군 산 시 장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공사명 : 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		비고
	읍	리	본번	편입 토지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	옥서	선연	1750-1	1750-16	잡	3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03, 81동 1303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박윤하			
2	옥서	옥봉	1496-2	1496-4	구거	10.0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25	심천석			
3	옥서	옥봉	1497-2	1497-5	구거	9.0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480	지대천			
4	옥서	옥봉	1497-3	1497-6	답	682.0	군산시 옥서면 원성산1길 50-2	조정희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94		
5	옥서	옥봉	1979-1	1979-15	답	155.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43	김옥이			
	옥서	옥봉	1979-1	1979-6	답	429.9					
	옥서	옥봉	1980-1	1980-43	답	278.0					
	옥서	옥봉	1980-1	1980-20	답	373.0					
6	옥서	옥봉	1979-4	1979-14	답	87.0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41-1	김애순		문연태	
	옥서	옥봉	1979-4	1979-12	답	71.5					
7	옥서	옥봉	1980-2	1980-40	답	202.5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46	송상호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화1길 50-6	송점례	
			1980-2	1980-22	답	109.6			전주시 덕진구 신복7길 16, 다동 3층 301호	송진국	
8	옥서	옥봉	1981-6	1981-20	답	100.8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8-10	장동철			
9	옥서	옥봉	1981-11	1981-25	답	90.7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54-2	오대운			
10	옥서	옥봉	1985-6	1985-22	답	100.5	군산시 의료원로 136 102동 1301호	강영숙			
11	옥서	옥봉	1984-11	1984-25	답	13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수로 26번길 12-1, 202호 (계산동)	정영태			
12	옥서	옥봉	1987-4	1987-26	답	85.4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593	심오목			

군산시 공고 제2021-1523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3.

군 산 시 장



1. 신조공인등록 연월일 : 2021. 7. 23.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21. 7. 23.
3. 신조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 사유	관리 부서
신 조	군산시성산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 탄	인증기 교체	성산면
	군산시장의인 성산면장전용	한글전서체 3.0*3.0				